

2025 부산디자이너의 날 유공 포상계획 공고

포상개요

- 디자인경영전략 및 디자인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협·단체를 포상하여 최고의 영예를 수여
-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·홍보 등을 통해 디자인역량강화 및 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최고의 영예를 수여

포상 대상자

- 디자인경영전략 및 디자인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협·단체, 개인 등

부 문	포상 종류		신청자격
기업 협·단체 개인	◆ 표창장 2개	◆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	-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 - 포상추천일 기준 부산·울산·경남지역에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및 협·단체 -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포상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이상인 자

- 추천권자 : 각 소속 기관장, 대표, 협·단체장, 개인(자천가능)

신청방법

- 추천공문 및 추천서류 제출
 - 제출서식 : 추천서류 서식[붙임2,3]
 - 제출방법 : 담당자 메일(jeok@dcb.or.kr) 송부
 - * 최종 선정 시, 원본제출 필요
- 추천기한 : 2025. 11. 27.(목), 18:00 한 (18:00 도착분에 한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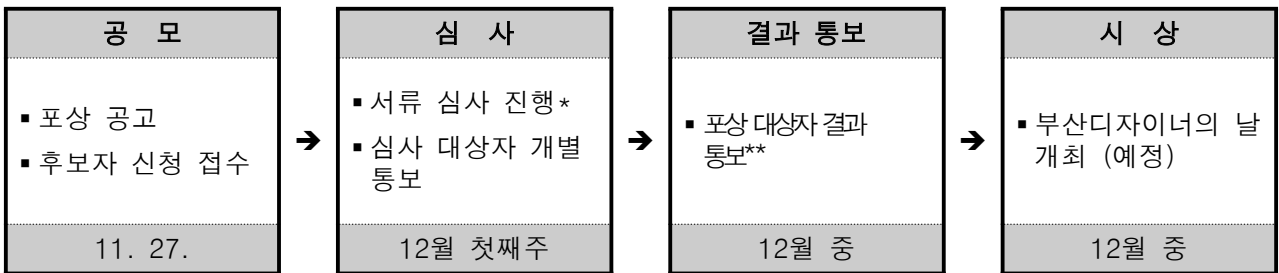
□ 공적기간

○ 개인표창 : 표창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

* 단,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인정 가능하나, 특별공적사유서 첨부, 명단 공적개요서 명시

○ 단체표창 :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업 및 협·단체

□ 선정방법 : 서류 및 심사, 발표



* 공로 부문은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심사 진행

** 심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되며, 최종 수상자 발표는 국가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12월에 통보됩니다.

*** 내부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동 가능

□ 재포상 및 이중포상 금지

○ 재포상 금지 ▶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(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, 단체표창은 제외)

○ 이중포상 금지 ▶ 수여일로부터 적용

-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

□ 추천제한 ※ 세부사항은 「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」에 따름

○ 국민표창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
-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 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○ 단체표창

-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민간단체에만 적용)
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-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-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**산업안전보건정책과**(☎ 044 - 202 - 8813)
 - 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-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32)
 - 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-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**근로감독기획과**(☎ 044 - 202 - 7538)
 - 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-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□ 문의처

- 전 화: 051-790-1022
- 전자우편: jeok@dcb.or.kr

- 붙임 1. (본문) 부산디자인어의 날 유공 포상 공고문 1부
2. 추천서식 1부.
3.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명단(양식) 1부
4. (참고)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